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민석 의원)

의안 번호	19-171
----------	--------

발의년월일 : 2019. 11.

발 의 자 : 이민석, 권영숙, 김영미,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

나.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4. 예산조치: 해당없음

5. 입법예고: 2019. 11. 21. ~ 11. 25.

6.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자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국장
3.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 관계자
6. 생활협동조합, 도·농교류 생산자 등 먹거리 공급 관계자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